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5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02월 0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 등 사회 공헌실적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, 재지정 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·평가하기 위한 심의기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 등 사회 공헌실적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함(안 제4조제2항제1호).
- 재지정 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·평가하기 위한 심의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제4항 신설).
-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연임 제한 적용을 명확히 함(부칙 안 제2조).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정기간 내 생산자, 소비자, 유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공헌실적
- ④ 시장은 지정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·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심사결과 활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부칙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재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, 순자산액 비율,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지정기간 내 농수산물 생산, 유통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 실적</p> <p>2. 지정기간 내 매년 제8조에서 정한 장려금 등의 지급 실적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신 설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2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</p>	<p>제4조(재지정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, 순자산액 비율,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지정기간 내 생산자, 소비자, 유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공헌실적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지정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·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심사결과 활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⑤ (개정안 제4항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도매시장법인(이 “법인”이라 한다),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의 이익활동이 확대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도매시장법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”을 “법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정요건”을 “지정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실적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정기간 내 생산자, 소비자, 유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공헌실적
2. 지정기간 내 매년 제8조에서 정한 장려금 등의 지급 실적

④ 시장은 지정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·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심사결과 활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당연직 8명 이내

가.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부서장,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
(본부장 등)

나. 유통인대표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), 하역단체
대표 등 6명 이내

2. 위촉직 12명 이내

가.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

나.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

다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

라.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명 이내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
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3조(지정) ①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을 지정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4조(재지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, 순자산액 비율,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<u>지정요건</u>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③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42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2조의2(책무)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도매시장법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,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의 이익활동이 확대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3조(지정) ① <u>시장</u>----- ----- <u>법인</u>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재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지정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실적 등</u>-----.</p> <p>1. <u>지정기간 내 생산자, 소비자, 유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공헌실적</u></p> <p>2. <u>지정기간 내 매년 제8조에서 정한 장려금 등의 지급 실적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지정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·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심사결과 활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42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, 공사 유통
관리업무 총괄 부서장(본부장 등)

2. 유통인대표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및 중
도매인 등),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

3.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

4.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, 서울특별시의회
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

5.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
험이 풍부한 사람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1. 당연직 8명 이내

가.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부서장, 공사
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(본부장 등)

나. 유통인대표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및
중도매인 등), 하역단체 대표 등 6명 이내

2. 위촉직 12명 이내

가.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

나.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

다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
이내

라.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
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2조의2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
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
수 있으며,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2년
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